

일반 정보

본 정보 시트에서 설명하는 절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내려진 판결이 소비자 채무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소액 청구 사건이나 다른 유형의 민사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시트에서는 판결 채권자(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사업체)에게 소비자 채무 관련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채무자의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판결 채무자(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 또는 사업체)가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작성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요청에 답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Code Civ. Proc., § 708.111.](#))

판결이 소비자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내려진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본 정보 시트에서 설명하는 양식이나 절차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selfhelp.courts.ca.gov/civil-lawsuit/judgment 사이트에서 금전 판결의 수령 및 지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판결이 소비자 채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비자 채무란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 용도로 빌린 돈, 재산, 보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채무에는 임대차 채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이나 벌금에 관한 판결, 또는 불법이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얻어진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소비자 채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확인하세요:

- **소액 청구 사건:** 판결 확정 통지(양식 SC-130 혹은 SC-200)를 받은 경우, 양식에서는 판결에 “소비자 채무에 관련된 금액(Code Civ. Proc., § 708.111)”이 포함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SC-130 양식의 10번 항목이나 SC-200 양식의 9번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 **다른 민사 사건:** 판결(양식 JUD-100) 양식을 받은 경우, 7번 항목에서 판결에 “소비자 채무에 관련된 금액(Code Civ. Proc., § 708.111)”이 포함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사법 위원회에서 발부된 양식이 아니라면, 판결 내용에 소비자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 조사는 무엇인가요?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의 최종 명령(판결)에서 한 사람이나 사업체가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에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경우, 때때로 판결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수령(판결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원하기도 합니다. 판결 채권자는 판결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얼마를 벌고(소득),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자산)에 대해 위증의 선서 하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자 조사”라고 합니다. 이 정보는 판결 채권자가 판결 채무자의 소득이나 자산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이 정보 시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판결 채권자:** 법원이 다른 당사자가 귀하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면, 귀하는 **판결 채권자**입니다. 본 정보 시트는 귀하가 법원에 채무자 조사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방법과, 채무자가 서면으로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응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채무자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④번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 채무자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양식을 어떻게 작성, 제출, 송달해야 하나요? ⑤번 및 ⑥번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⑦~⑩번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 **판결 채무자:** 법원에서 상대 당사자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귀하는 **판결 채무자**입니다. 본 정보 시트는 귀하가 판결 채권자에게 받은 양식에 답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EJ-141 혹은 SC-136 양식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⑫번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 나의 재정 상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⑬~⑰번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⑱번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 **재정 진술서 제출 후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 및 명령서(양식 EJ-147)**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⑲번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 장애가 있거나 영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8페이지를 읽으십시오.

판결 채권자를 위한 정보

본 정보 시트의 이 부분은 소비자 채무 관련 사건에서 판결 채권자(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채무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④ 나의 사건에서 채무자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본인의 사건이 **소액 청구 사건이 아니고**, 법원에 채무자 조사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려면 **소비자 채무 관련 조사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EJ-141](#))를 작성하십시오.

귀하의 사건이 **소액 청구 사건인 경우에는** EJ-141 양식이나 **소비자 채무 조사 관련 재정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SC-136](#))을 사용하십시오.

- 판결 채무자가 **판결 채무자 자산 진술서**(양식 SC-133)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보내지 않았고, 법원에서 이를 요구하도록 요청하려면 SC-136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법원 서기가 **판결 확정 통지**(양식 SC-130 또는 SC-200)를 판결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결 채무자는 반드시 SC-133 양식을 귀하에게 보내야 합니다. SC-136 양식은 판결 채무자에게 작성한 SC-133 양식을 가지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자금과 재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구합니다.

- 판결 채무자가 채무자 조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를 원하고, 귀하가 SC-133 양식을 받을 권리를 강제하고 싶지 않거나 이미 양식 SC-133을 받았다면, EJ-141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법원이 이전에 판결 채무자에게 조사 출석을 명령했고, 다른 조사를 요청하려면 ⑪번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 및 조사 신청 및 명령**(양식 AT-138/EJ-125)을 사용하고, **EJ-141 혹은 SC-136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채무자 조사를 요청하고 싶지만 판결이 **소비자 채무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 판결이 소비자 채무에 관한 것이더라도 판결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⑤ EJ-141 또는 SC-136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 하나요?

소비자 채무 관련 조사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EJ-141) 또는 **소비자 채무 조사 관련 재정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SC-136)은 다음 단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양식의 1페이지에 있는 1번 항목(판결 채무자의 이름)과 2페이지의 "본 명령 신청" 섹션에 있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 심리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은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심리 날짜를 정할 때, ⑥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양식을 송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기에게 받은 심리 날짜, 시간 및 장소를 1페이지의 "심리 날짜" 섹션에 기재하십시오.
-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 기록을 위해 작성한 양식의 사본을 최소 한 부 이상 만드십시오. 심리에 출석할 때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EJ-141 또는 SC-136 양식을 작성한 후 작성한 양식의 원본은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는 한,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⑥ EJ-141 또는 SC-136 양식을 어떻게 송달 하나요?

아래의 단계에 따라 작성한 EJ-141 또는 SC-136 양식을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전달)하십시오. 판결 채무자가 조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은 귀하가 아래의 모든 단계를 완료하지 않으면 집행될 수 없습니다:

- 양식은 조사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 보안관, 집행관 또는 등록된 송달 집행인에 의해 양식 사본이 판결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도록 하십시오. EJ-141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식의 3번 항목에서 지정된 사람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송달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법원에 송달 증명서 제출 기한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송달 및 송달 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lfhelp.courts.ca.gov/civil-lawsuit/judgment/collect/ask-debtor-exam-consumer-debt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보안관에게 양식 송달을 요청하려면 법원 서류 송달 보안관 요청(양식 [SER-00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수수료 면제를 받았다면, 보안관이 무료로 서류를 송달해 줄 것입니다.

EJ-141 또는 SC-136 양식을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는 다음 양식의 비어 있는 사본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소비자 채무 관련 채무자 조사 정보 (양식 [EJ-140-INFO/SC-136-INFO](#))
-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 (양식 [EJ-144](#))
-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 (양식 [EJ-143](#))
- 판결 집행 면제 (양식 [EJ-155](#))
- 집행 면제 관련 현재 금액 (양식 [EJ-156](#))

⑦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 채무자는 조사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법원에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를 제출하고, 이 양식 사본과 작성된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를 귀하에게 송달함으로써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경우 예정된 채무자 조사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채무자가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의 2번 항목을 확인한 경우(모든 돈과 재산이 판결 집행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예정된 채무자 조사를 취소할 것입니다.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를 읽은 후에도 귀하가 채무자 조사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를 작성, 송달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⑧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는 판결 채무자가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채무자 조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채무자가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는 다음 단계에 따라 작성합니다:

- 심리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하기 위해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심리 날짜를 정할 때, ⑨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EJ-146 양식을 송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의 1~7번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7번 항목에는 채무자가 재정 진술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집행하려는 판결이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에 관한 경우, 8번과 9번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 귀하의 신청에 대한 심리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10번 항목의 확인란에 표시하십시오. 귀하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 판결 채무자의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 그리고 판결 채무자가 심리에서 제시하는 주장을 토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도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된 양식의 사본을 만들어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하십시오.
- 기록을 위해 작성한 양식의 사본을 최소 한 부 이상 만드십시오. 귀하가 심리에 출석하는 경우, 작성된 양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⑨ EJ-146 양식을 송달하고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를 작성한 후에는 작성한 양식의 사본을 다음의 단계에 따라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전달)하십시오:

- 소송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판결 채무자에게 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는 직접 송달하는 경우 심리일에서 **법원 운영일 기준 최소 16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팩스, 특급 우편 또는 기타 익일 배송 방법을 통해 통지를 보내는 경우 법원 운영일 기준 16일 기간에 달력 기준 2일이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 내 주소에서 우편으로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 법원 운영일 기준 16일 기간에 달력 기준 5일이 추가됩니다. 전자 송달이 허용될 수 있으며(판결 채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전자 송달 전 동의가 필요함), 송달 시간을 법원 운영일 기준 2일 연장합니다. 통지 송달 시간 및 전자 송달에 대한 추가 정보는 Code of Civil Procedure 섹션 [708.111\(d\)\(3\)](#), [1005](#), [1010.6](#) (leginfo.legislature.ca.gov 에서 열람 가능)을 참고하십시오.
- 송달 집행인에게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십시오. 송달 증명서 양식은 courts.ca.gov/rules-forms/find-your-court-forms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J-146 양식을 송달하는 것 외에, 다음 단계에 따라 작성된 원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를 작성한 원본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십시오.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는 한, 제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판결 채무자가 작성한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 사본을 포함해서 제출하십시오.
- 판결 채무자가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 그리고 판결 채무자의 소비자 부채 재정 진술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원본 송달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법원에 송달 증명서 제출 기한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신청한 조사의 심리에 출석하는 경우, 작성된 EJ-146 양식 사본과 판결 채무자의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또한 소비자 채무 재정 진술서 제출 후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 및 명령서(양식 [EJ-147](#)) 사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1페이지의 심리 날짜 및 시간을 제외하고 EJ-147 양식을 모두 작성하십시오. 법원이 조사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사법관은 심리에서 EJ-147 양식에 서명하여 심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⑩ 요청한 조사에 대한 심리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귀하의 조사 요청서를 심리하고 판결 채무자가 심문에 출석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법원이 명령한 조사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소비자 채무 재정 진술서 제출 후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 및 명령서(양식 [EJ-147](#))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J-147 양식을 제출하는 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심리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EJ-147 양식을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EJ-147 양식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송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판결 채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전자 송달 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자 송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de of Civil Procedure 섹션 [1010.6](#) 을 읽어보십시오). 직접 송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⑪ 판결 채무자에 대한 다른 조사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소비자 채무 관련 조사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EJ-141) 또는 소비자 채무 조사 관련 재정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SC-136) 양식을 제출하여 법원이 판결 채무자에게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명령한 후 어떤 이유로든 그 조사가 취소된 경우,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같은 판결 채무자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 채무자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요청하려면 EJ-141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SC-136 양식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판결 채무자를 위한 정보

본 정보 시트의 이 부분은 소비자 채무 관련 사건에서 판결 채무자(소송에서 패소하여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판결 채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얼마를 벌고(소득),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자산)에 대해 질문에 답해야 하는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⑫ EJ-141 혹은 SC-136 양식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소비자 채무 관련 조사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EJ-141) 또는 소비자 채무 조사 관련 재정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SC-136) 양식을 받은 경우, 해당 양식의 2번 항목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판결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아래 단계 참고). 판결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조사일 최소 15일 전에 법원에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거나, 자신의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판결 채권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⑬ 나의 재정 상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 채권자에게 본인의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합니다:

- ⑭ 및 ⑮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로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 양식을 작성하고 송달하십시오. 이 양식의 사본은 귀하가 판결 채권자로부터 받은 EJ-141 또는 SC-136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⑯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로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 양식과 EJ-144 양식을 위한 송달 증명서를 작성, 송달하고 제출하십시오. EJ-143 양식의 사본은 귀하가 판결 채권자로부터 받은 EJ-141 또는 SC-136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J-143 및 EJ-144 양식은 courts.ca.gov/rules-forms/find-your-court-forms 사이트나 귀하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있는 자조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⑭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는 다음 단계에 따라 작성합니다:

- 양식 전체를 읽어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양식에 은행 계좌 번호나 기타 계좌 번호를 기입하지 마십시오.
- 1번과 2번 항목을 작성하려면, 귀하의 소득이나 자산 중 일부가 면제(집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⑮번 “소득이나 자산이 면제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 양식의 나머지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2번 항목에서 상자(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사람의 기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귀하의 돈이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됨을 나타냄)를 표시한 경우, 양식의 일부 항목에서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안내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안내합니다.
-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 2번 항목의 상자를 선택한 경우, 귀하와 배우자가 별거 중이 아니라면 배우자도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의 기록을 위해 작성한 양식의 사본을 최소 한 부 이상 만드십시오. 법원에 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 작성된 양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⑰번, “서면으로 재정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J-144 양식을 작성한 후, 조사 일시(판결 채권자로부터 받은 EJ-141 또는 SC-136 양식의 2번 항목에 기재된 날짜 및 시간)에서 **최소 15일 전까지** 서명된 EJ-144 양식 원본을 판결 채권자에게 송달(전달)해야 합니다.

EJ-144 양식은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EJ-144 양식을 송달하기 전에 ⑯번,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EJ-144 양식을 송달하는 지침은 EJ-143 양식을 송달하는 지침과 동일하며, EJ-143 양식과 EJ-144 양식을 동시에 송달할 수 있습니다.

⑮ 소득이나 자산이 면제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하가 벌거나 소유한 일부 돈(소득) 또는 돈과 재산(자산)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채권자가 이 돈이나 재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돈이나 자산 중 일부가 면제되는지 확인하려면 **판결 집행 면제**(양식 [EJ-155](#))를 읽으십시오. 이 양식의 사본은 귀하가 판결 채권자로부터 받은 EJ-141 또는 SC-136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courts.ca.gov/rules-forms/find-your-court-forms 사이트나 귀하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있는 자조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J-155 양식에는 면제되는 여러 종류의 돈과 자산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가진 각 종류의 돈과 자산이 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돈과 자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가진 돈이나 자산이 EJ-155 양식에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돈이나 자산 유형이 EJ-155 양식에 나와 있다면, 얼마만큼 면제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금액만 면제되는 돈과 자산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 또는 가치가 면제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귀하의 상황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종류의 돈과 자산이 얼마나 면제되는지 확인하려면 **집행 면제 관련 현재 금액**(양식 EJ-156)을 읽어보십시오. 이 양식의 사본은 귀하가 판결 채권자로부터 받은 EJ-141 또는 SC-136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courts.ca.gov/rules-forms/find-your-court-forms 사이트나 귀하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있는 자조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J-156 양식에는 일부 종류의 돈과 자산에 대한 면제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가진 돈이나 자산이 EJ-156 양식에 나와 있지 않다면, EJ-155 양식에 해당 돈이나 자산에 대해 명시된 특정 법률(조항 및 섹션 번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식 EJ-155에는 “현금”에 대해 Code of Civil Procedure(CCP) 섹션 704.070이 조항 및 섹션 번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J-155 양식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주법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ginfo.ca.gov. 면제 내용이 있는 미국 연방법 조항(EJ-155 양식에 “USC” 표시)은 uscode.house.gov/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류의 돈과 자산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기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에는 “판결 채무자와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의 기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사람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귀하의 돈이나 자산 중 일부가 면제되는지 확인한 후,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의 1번과 2번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 귀하의 돈이나 자산이 모두 면제되지 않는 경우, 1a번 박스를 표시하십시오.
- 귀하의 돈이나 자산이 모두 면제되는 경우, 1b번 박스를 표시하십시오.
- 귀하의 돈이나 자산 중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 1c번 박스를 표시하십시오.
- 귀하의 돈이나 자산 중 일부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기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경우, 2번 항목의 박스를 표시하십시오.

⑯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 양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 양식은 다음 단계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판결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판결 채권자가 EJ-141 또는 SC-136 양식에 제공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번 항목에 법원에서 정한 조사의 날짜, 시간, 장소를 기재하십시오. 이는 판결 채권자로부터 받은 EJ-141 또는 SC-136 양식의 2번 항목에 기재된 정보입니다.

- 귀하가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에서 1b 상자에 표시하여 귀하의 모든 소득과 자산이 면제된다고 명시했다면, 2번 항목의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 작성된 양식 사본을 만들어 판결 채권자에게 송달(제공)하십시오.
- 기록을 위해 작성한 양식의 사본을 최소 한 부 이상 만드십시오. 법원에 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 작성된 양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17번, “서면으로 재정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작성된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의 사본을 판결 채권자에게 송달(제공)하십시오. EJ-143 양식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송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판결 채권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전자 송달 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자 송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de of Civil Procedure 섹션 [1010.6](#) 을 읽어보십시오). EJ-143 양식은 EJ-144 양식과 동시에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류를 직접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 집행인에게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십시오. 송달 증명서 양식은 courts.ca.gov/rules-forms/find-your-court-forms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작성을 완료한 EJ-143 양식은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EJ-143 양식을 작성한 원본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J-143 양식을 제출할 때, EJ-144 양식에 대해 작성된 송달 증명서 원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EJ-143과 EJ-144 양식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두 양식에 동일한 송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J-143 양식에 대한 별도의 송달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해당 송달 증명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 마감일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조사 날짜(판결 채권자로부터 받은 EJ-141 또는 SC-136 양식의 2번 항목에 기재된 날짜)에서 **최소 15일 전까지** EJ-143 양식, 그리고 EJ-144 양식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J-143 양식, 그리고 EJ-144 양식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채무 관련 조사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EJ-141) 또는 **소비자 채무 조사 관련 재정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SC-136)의 2번 항목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⑰ 서면으로 재정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 그리고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조사일에서 15일 전에 송달하고 제출한 경우, **소비자 채무 관련 조사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EJ-141) 또는 **소비자 채무 조사 관련 재정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신청 및 명령**(양식 SC-136)의 2번 항목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J-143 양식에서 귀하가 2번 항목에 표시한 경우, 법원은 조사를 취소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조사를 취소하는 경우, 판결 채권자는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를 제출하여 이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⑱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 양식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 양식은 귀하가 재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라도 법원이 귀하에게 조사를 위한 법원 출석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양식에서는 판결 채권자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법원은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EJ-146 양식의 2번 항목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귀하는 반드시 이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심리는 귀하의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에 있는 정보가 충분하고, 판결 채권자가 조사에서 귀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입니다. 심리에 출석할 때 작성한 **재정 진술서 통지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3), **재정 진술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4) 양식의 사본을 지참하십시오.

⑲ 소비자 채무 재정 진술서 제출 후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 및 명령서(양식 EJ-147)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판결 채권자의 신청 통지서 및 조사 요청서 — 소비자 채무(양식 EJ-146)에 대해 심리한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 채권자로부터 소비자 채무 재정 진술서 제출 후 조사를 요청하기 위한 신청 및 명령서(양식 EJ-147)를 받게 됩니다. EJ-147 양식에는 귀하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돈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조사의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J-147 양식의 2번 항목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법원에서는 사건을 호명할 것입니다. 귀하는 법원에서 증언할 때처럼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법원은 귀하와 판결 채권자에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것입니다. 판결 채권자는 귀하의 돈과 재산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귀하가 EJ-147 양식의 2번 항목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귀하에게 판결 채권자의 변호사 수입료와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본 정보 시트의 이 부분에는 판결 채권자와 판결 채무자 모두를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⑳ 영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한 양식과 문서를 제출할 때 법원 서기에게 법원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통역사 요청서(양식 INT-300) 양식이나 지역 법원 양식, 웹사이트에서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통역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lfhelp.courts.ca.gov/request-interpreter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㉑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가 있어 법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 편의 제공 요청(양식 MC-410) 양식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ADA Coordinator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원에 장애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양식 MC-410-INFO)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